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8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최수진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 의원안, 최기상의원안)	3

I. 개요

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5.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말 국회는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나(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공제), 2025년 12월 31일 공제가 만료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99,719명에 불과했으나 2025년 6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134,407명으로 3분의 1 이상 증가했음.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육아휴직자수도 같은 기간 10,628명에서 15,077명으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사용 장려 문화가 발돋움해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 5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u>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인상 등</u> ○ (현행과 같음) ○ 개정안별 상이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중소(3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정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견		
	중소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900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정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견	
	중소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1,500 (정준호의원안)		900 1,100 (정준호의원안)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024. 12. 31. 육아휴직 복귀자: <u>2025. 12. 31.</u>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복귀자: <u>2026. 12. 31.</u>(이용우의원안, 정부안) <u>2027. 12. 31.</u>(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최수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정준호의원안)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1),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준호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7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시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또는 900만원(중견기업)을 세액공제하는 추가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공제세액을 20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1

년치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음.

이후 본 조세특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항목으로 재편성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또한, 개편 전까지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했던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복직 후 근무기간이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1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4년 들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21	1.24	1.17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상	15.7	15.8	13.4	14.3	13.1	16.5	14.2	17.6	13.8
4명 이하	10.8	10.4	10.7	10.1	11.3	11.8	11.8	17.1	18.8
5~49명	13.4	13.8	15.0	15.8	17.8	19.6	21.1	26.4	29.7
50~299명	13.9	14.8	17.0	18.6	20.9	22.8	24.8	29.9	32.3
300명 이상	25.0	26.2	28.0	29.6	30.5	31.7	32.9	36.2	37.4
계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2.9

주: 각 연도별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나누어 100분율로 표시, 육아휴직대상자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남성 87.6%, 여성 89.1%)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등이 제시되었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 비율]

(단위: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89.1	87.4	90.9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7.4	84.7	90.2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때문	84.6	84.4	84.8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79.2	82.6
경력유지, 커리어개발 등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79.1	72.2	86.4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66.0	62.9	69.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¹⁾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연간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360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200만원 ¹⁾ 이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²⁾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³⁾	10만원	120만원

주 1)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²⁾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됨.

둘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제도 도입이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략)

2)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복귀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³⁾

셋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154

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4)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